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명: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2단지(국반정동 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 공급위치: 수원시 권선구 국반정동 186-2번지 일원
- 공급대상: 총 1,833세대 중 일반분양 402세대 [전용면적 59㎡: 28세대, 74㎡: 194세대, 84㎡: 180세대]
- 견본주택 개관: 2019.11.22(금) / 10:00 ~18:00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동·호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방법	분양홈페이지 등 게재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당사 견본주택 방문	당사 견본주택 방문
일정	2019.11.21(목)	2019.11.26(화)	2019.11.27(수)	2019.11.28(목)	2019.12.05(목)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2019.12.09(월) ~ 2019.12.15(일)	2019.12.16(월) ~ 2019.12.18(수)
일시	-	08:00 ~ 17:30	08:00~17:30	08:00~17:30	-	10:00~16:00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홈페이지 (http://thefirst-ihanulch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14:00까지 견본주택 일반관람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 일반인 입장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0.00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수원시 주택 조례」 제10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수원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2018.11.21 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세대정의], 제2조 제4호[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제7의2, 제28조 제8항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권 등 주택소유’ 정의, ‘추첨제 선정방식’ 등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옥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565호,2018.12.11])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 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혼인신고일부터 시행일 이전(시행일: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원료분에 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과거 국내 인정되는 체류자가 아닌 해외거주자로 인정되는 체류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수원시 1년이상 계속거주한 자[2018.11.21 부터 계속거주])이 불가하며, 기타 수도권 신청(수원시 1년 미만 및 기타 수도권 지역) 이 가능합니다. 단,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및 기타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외거주 인정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아래 예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과거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입국 후 7일 동일국가 제출국시 계속 해외거주로 봄)

②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신청 대상자(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기타 수도권 거주신청(수원시 거주 1년미만 또는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 및 기타수도권 신청 불가한 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계속하여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는 대상자(단순여행, 출장, 파견 등)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개년도 합산 183일 초과 포함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개년도 합산 183일 초과 포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정제 40%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정제 제한사항 : 가정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정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2년 이내 가정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hefirst-ihanulch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가정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정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최하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정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정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가정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정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당첨발표일이 2017.10.1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정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 - 0000호 (2019.00.0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86-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 지상9~15층, 28개동 총 1,833세대 중 일반분양 4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 1,431세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
 일반공급 230세대, 특별공급 172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0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2세대)

■ 입주예정일 : 2021년 12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m ²)	총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19001012	01	59.9600A	59A	59.9600	23.6403	83.6003	43.9439	127.5442	40.8026	17	1	2	3	1	7	10	1	2021년 12월
		02	59.9200B	59B	59.9200	23.7482	83.6682	43.9146	127.5828	40.7753	7	1	1	1	1	4	3	-	
		03	59.9700C	59C	59.9700	24.4333	84.4033	43.9513	128.3546	40.8094	4	1	1	1	-	3	1	-	
		04	74.9200A	74A	74.9200	24.7636	99.6836	53.3276	153.0112	50.9828	89	9	9	18	2	38	51	9	
		05	74.8800B	74B	74.8800	24.7637	99.6437	53.2992	152.9429	50.9556	105	11	10	21	3	45	60	17	
		06	84.9600A	84A	84.9600	25.5128	110.4728	60.1098	170.5826	57.8150	71	7	7	14	2	30	41	10	
		07	84.9400B	84B	84.9400	25.5484	110.4884	60.0956	170.5840	57.8014	109	10	10	22	3	45	64	10	
	합계										402	40	40	80	12	172	230	47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각 타입별 주거면적으로 배분한 것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전용면적)	동별(라인별)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0.01.15	2020.03.20	2020.07.20	2020.10.20	2021.02.22	2021.06.21	2021.09.20		
59A (59.9600)	203동1호2호,4호 205동5호 215동4호 222동1호,3호,4호 223동1호,4호,5호 226동1호 228동4호	17	1층	1	128,120,164	231,479,836	359,600,000	10,000,000	2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107,880,000
			4~5층	1		241,879,836	370,000,000	10,000,000	2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6~10층	1		247,679,836	375,800,000	10,000,000	27,580,000	37,580,000	37,580,000	37,580,000	37,580,000	37,580,000	37,580,000	112,740,000	
			11층이상	14		253,479,836	381,600,000	10,000,000	2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80,000	
59B (59.9200)	215동3호 223동2호,3호 226동2호,3호	7	2층	1	128,034,442	229,365,558	357,400,000	10,000,000	2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107,220,000	
			11층이상	6		247,565,558	375,600,000	10,000,000	2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112,680,000	
59C (59.9700)	203동3호 222동2호	4	2층	1	128,141,516	240,658,484	368,800,000	10,000,000	2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36,880,000	110,640,000	
			6~10층	1		253,658,484	381,800,000	10,000,000	2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114,540,000	
			11층이상	2		259,458,484	387,600,000	10,000,000	28,760,000	38,760,000	38,760,000	38,760,000	38,760,000	38,760,000	38,760,000	116,280,000	
74A (74.9200)	208동1호,4호,5호 211동1호,5호 212동1호,4호,5호 213동1호,4호 216동1호 217동1호,4호,5호 218동1호 219동1호,5호 221동1호,4호,5호 224동1호,4호,5호 225동1호,4호,5호	89	1층	9	160,085,992	273,114,008	433,200,000	10,000,000	3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129,960,000	
			2층	8		277,314,008	437,400,000	10,000,000	33,740,000	43,740,000	43,740,000	43,740,000	43,740,000	43,740,000	43,740,000	131,220,000	
			3층	2		282,014,008	442,100,000	10,000,000	34,210,000	44,210,000	44,210,000	44,210,000	44,210,000	44,210,000	44,210,000	132,630,000	
			4~5층	19		285,714,008	445,800,000	10,000,000	3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133,740,000	
			6~10층	11		292,614,008	452,700,000	10,000,000	35,270,000	45,270,000	45,270,000	45,270,000	45,270,000	45,270,000	45,270,000	135,810,000	
			11층이상	40		299,614,008	459,700,000	10,000,000	3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137,910,000

74B (74.8800)	208동2호,3호 211동2호,3호 212동2호,3호 213동2호,3호 216동2호,3호 217동2호,3호 218동2호,3호 219동2호,3호 221동2호,3호 224동2호,3호 225동2호,3호	105	1층	17	160,000,584	268,199,416	428,200,000	10,000,000	3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128,460,000		
			2층	15		272,299,416	432,300,000	10,000,000	3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129,690,000
			3층	7		276,899,416	436,900,000	10,000,000	3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131,070,000
			4~5층	24		280,599,416	440,600,000	10,000,000	3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132,180,000
			6~10층	6		287,499,416	447,500,000	10,000,000	3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44,750,000	134,250,000
			11층이상	36		294,399,416	454,400,000	10,000,000	3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84A (84.9600)	201동1호,4호,5호 202동1호,4호,5호 204동1호,4호,5호 207동1호,4호,5호 209동3호,4호 210동1호,4호 220동1호,4호,5호	71	1층	10	181,539,100	281,860,900	463,400,000	10,000,000	3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139,020,000	
			2층	4		286,260,900	467,800,000	10,000,000	3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46,780,000	140,340,000
			3층	3		291,260,900	472,800,000	10,000,000	3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141,840,000
			4~5층	10		295,260,900	476,800,000	10,000,000	37,68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47,680,000	143,040,000
			6~10층	8		302,660,900	484,200,000	10,000,000	3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145,260,000
			11층이상	36		310,160,900	491,700,000	10,000,000	3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49,170,000
84B (84.9400)	201동2호,3호 202동2호,3호 204동2호,3호 207동2호,3호 209동1호,2호 210동2호,3호 220동2호,3호	109	1층	10	181,496,396	277,003,604	458,500,000	10,000,000	35,850,000	45,850,000	45,850,000	45,850,000	45,850,000	45,850,000	45,850,000	45,850,000	137,550,000	
			2층	12		281,503,604	463,000,000	10,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3층	11		286,403,604	467,900,000	10,000,000	36,790,000	46,790,000	46,790,000	46,790,000	46,790,000	46,790,000	46,790,000	46,790,000	46,790,000	140,370,000
			4~5층	27		290,303,604	471,800,000	10,000,000	3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141,540,000
			6~10층	17		297,703,604	479,200,000	10,000,000	3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43,760,000
			11층이상	32		305,103,604	486,600,000	10,000,000	3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m²)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600	59.9200	59.9700	74.9200	74.8800	84.9600	84.9400
약식표기	59A	59B	59C	74A	74B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함.(향후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음.단,발코니 확장 및 미확장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m²)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5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m²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1차,2차),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계약금(1차,2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1차,2차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방법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기관추천	①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노부모부양	인터넷 청약접수

※ 2018 .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본인만 신청가능)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 / 세대)

구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	1	-	-	1	1	1	-	4
		서울	-	-	-	1	1	1	-	3
		인천	-	-	-	1	1	1	-	3
	국가보훈대상자		-	-	-	1	2	1	3	7
	장기복무제대군인		-	-	-	1	2	1	3	7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	1	2	2	1	2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1	-	2	2	1	2	8
소계		1	1	1	9	11	7	10	4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	1	1	5	5	4	5	22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기타수도권 거주자(50%)		1	-	-	4	5	3	5	18
	소계		2	1	1	9	10	7	10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1	1	14	16	11	17	63
		일반공급(25%)	-	-	-	4	5	3	5	17
	소계		3	1	1	18	21	14	22	8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2	3	2	3	12	
합계		7	4	3	38	45	30	45	17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신청자격 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및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40% 이상 선정. ※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 선정.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복당첨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불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함. 견본주택 현장접수 시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현장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또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439 1780 2881 2005">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39 1780 2881 1816">[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th> </tr> <tr> <th data-bbox="439 1816 1145 1852">특별공급 대상</th> <th data-bbox="1145 1816 2881 1852">청약통장 구비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9 1852 1145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참전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 </td> <td data-bbox="1145 1852 2881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td> </tr> </tbody> </table>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참전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참전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추천기관 ①장애인: 수도권 거주지역 장애인복지과 ②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경기남부보훈지청 ③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④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①임신의 경우: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일부개정]에 의거 경기도의 경우 경쟁이 있을 시 수원시 1년 이상거주 신청자가 기타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 인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수원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th> <th colspan="2">배 점 표</th> <th colspan="2"></th> </tr> <tr> <th rowspan="2">평점요소</th> <th rowspan="2">총 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colspan="2" rowspan="2">비 고</th> <th colspan="2" rowspan="2"></th> </tr> <tr> <th>기 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이하 이 표에서 같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단,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을 산정 함.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경기·서울·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p>※ 상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p> <p>※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p>										
신혼부부 특별공급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p> <p>•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p> <p>•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p> <p>•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p>			<p>•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혼인신고일로부터 시행일 이전(시행일:'18.12.11)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함.</p> <p>•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p> <p>▪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1순위</th> <th>2순위</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자녀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자녀 신혼부부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에 한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 </td> </tr> </tbody> </table>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자녀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자녀 신혼부부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에 한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자녀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자녀 신혼부부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에 한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소형저가 주택 등) 1호 또는 1세대를 제외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외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

상 경과한 신혼부부
 ※ 총 자녀수가 1자녀이고, 그 자녀가 혼인신고일 이전 출생한 공급신청자인 경우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미성년자녀수 포함.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미성년자녀수 포함.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201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

구분	공급비율 (신혼부부 배정세대수)	소득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상 전년도 기준 지역세대주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표기 및 전년도 소득이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종교기관(교회,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소득합산)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소형·자가주택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표2]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단,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2018.11.21 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자보다 우선함.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구분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순위 1순위 2순위	주택형 85㎡ 이하 전 주택형	공급방법 가 점 제 40% 추 첨 제 60%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2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제한: 당첨발표일이 2017.10.1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p>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공급합니다.</p> <p>※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p> <p>①.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p> <p>※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다만,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전용면적 85㎡이하 평형,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td> <td>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td> </tr> <tr> <td>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td> <td>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td> </tr> <tr> <td>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td> <td>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td> </tr> <tr> <td>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td> <td>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td> </tr> </table> <p>※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원시 및 경기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p>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비고	구 분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비고																								
구 분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청약신청 및 당첨자선정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표2]가 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제 폐지(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항목 없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표2]가점점수 산정기준표(일반공급 및 노부모부양)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30세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공급신청자 청약가점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제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신청자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p>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p>■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p>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한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II. 신청일정 및 방법,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26(화)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고령자 및 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만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당사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27(수)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수협,농협,우리,SC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KEB하나,신한은행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28(목) 08:00~17:30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초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p>[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별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p>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표3]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접수일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시 구비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확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다자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및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특별공급			직계존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 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자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번호 등 상세로 발급 요망.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등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일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9.12.05(목)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일시 등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9.12.09(월) ~ 2019.12.15(일), 7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88-1) - 특별공급 당첨자: [표3]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및 계약서류 지참. - 1,2순위 일반당첨자: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9.12.16(월) ~ 2019.12.18(수),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88-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 검수일시 등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당첨자 검수일 및 계약체결 등은 특별공급 및 일반당첨자에 한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검수일 및 추첨, 계약체결 등 자세한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별도 통보예정 임.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한 일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 일반예비입주자는 해당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 내 방문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공급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2.05 ~ 2019.12.14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12.0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 및 기타 수도권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와 제출하시기 바람,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

V. 계약체결

■ 구비사항(특별공급 당첨자는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시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계약금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영수증
	○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일반공급[가점채당첨, 1순위 가점제·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다자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요망.
	○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특별공급	○	[표3]특별공급구비서류	계약자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제출 시 구비서류 생략	
일반공급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순위 추첨제 (1주택처분서약자)	• 1주택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금융결제원 발급)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1,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01-2066-0299-00	국제자산신탁(주) 이창하

※ 공급대금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19.12.16.(월)~12.18(수))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지정된 공급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2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분양상당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또는“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대답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 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당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통보 예정 임.

■ 입주예정일 : 2021년 1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 · 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등

VI. 추가선택품목 계약(유상옵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금액(납부 계좌 및 계약일은 별도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성	공급금액
59A,59B,59C	2개소(거실+안방)	3,200,000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5,800,000
74A,74B	2개소(거실+안방)	3,500,000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6,200,000
84A,84B	2개소(거실+안방)	3,600,000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6,6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함.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는 계약 체결 시점 LG전자 제조사로 정하며,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에어컨옵션 미선택시 거실은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박스, 안방은 천장형 에어컨 냉매박스가 설치됩니다. (일반분양 기준)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로 일괄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한 별도 납부계좌가 공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가전제품(납부 계좌 및 계약일은 별도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업체명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LG	S711SI24B	5,4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포함)	LG	K221PR14BL	1,500,000	59A타입 제외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ERA-BTH32	490,000	2구+1구 하이브리드(기본:가스쿡탑[3구])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현관중문(납부 계좌 및 계약일은 별도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시공위치	공급금액	비고
59A	현관	990,000	원슬라이딩
59B	현관	1,550,000	3연동 슬라이딩
59C	현관	990,000	원슬라이딩
74A	현관	1,550,000	3연동 슬라이딩
74B	현관	1,550,000	3연동 슬라이딩
84A	현관	990,000	원 슬라이딩
84B	현관	1,550,000	3연동 슬라이딩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현관중문은 타입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타입의 중문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수 있음.

■ 가구 및 기타(납부 계좌 및 계약일은 별도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비고
안방 불박이장	일반	59A	1,550,000	
	TV형		1,900,000	
	일반	59B	1,650,000	
	TV형		1,950,000	
	일반	74A	1,950,000	
	TV형		2,250,000	
	일반	74B	2,000,000	
	TV형		2,300,000	
일반	84A,84B	2,100,000		
TV형		2,400,000		
침실1 불박이장	자녀방(학령기장)	전타입	1,250,000	
	수납장		1,250,000	
주방 마감	엔지니어드 스톤(벽+상판)	59A,59B,59C	1,400,000	기본: 인조대리석+타일
		74A,74B	1,650,000	
		84A,84B	2,000,000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조명결합형 공기청정기(안방 드레스룸) + 현관에어클린(현관에어샤워기+에어브러쉬)		전타입	1,300,000	

※ 상기 설치 및 방 위치, 상세한 확장 부위 등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은 조명결합형 공기청정기 및 현관에어클린 시스템 통합으로 옵션 적용됩니다.

※ 현관에어클린 시스템은 에어샤워기 및 에어브러쉬가 설치됩니다. 에어샤워기는 현장 천장, 에어브러쉬는 신발장 내부에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시 조명결합형 공기청정기는 드레스룸에 설치되며 기본형 조명기구 대체로 설치됩니다. (미선택시 기본 조명 설치)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정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선택품목 계약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중도금 일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해제는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됨.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에 따라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및 주방상판타공 사이즈 등이 달라질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무상옵션 품목

품목	시공위치	타입	비고
안방화장대 및 드레스룸	입식화장대 + 드레스룸(수납장) 또는 디럭스 드레스룸	59C타입 제외	59C타입은 입식화장대만 제공되며, 디럭스드레스룸은 선택불가
평면 통합형	침실2 + 거실 통합형	59A타입 해당	
발코니 확장	침실1 + 침실2 통합형	59A타입 제외	
	-	전 타입	

※ 무상옵션 품목 중 안방화장대 및 드레스룸, 평면 통합형은 선택이 가능하나, 발코니 확장은 미확장 세대로 선택이 불가함.

- ※ 안방화장대 입식화장대는 기본무상제공되며, 형태 및 위치 등 변경이 불가함.
- ※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되며,향후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음.
- ※ 상기 설치 및 방 위치, 상세한 확장 부위 등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Ⅶ. 기타

▣ 유의사항(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공통	일반사항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부대편의시설,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thefirst-ihanulche.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정하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카탈로그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시점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공사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당사 디자인가이드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1단지 내 북측에는 사회복지시설, 문화공원, 종교시설, 문화시설, 서측에는 주차장, 2단지 서측에는 준주거용지, 근린공원,주차장, 특별계획구역 용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각 용지별 계획이 있으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개발 시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등으로 소음 및 조망의 간섭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동측에는 원천리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관련 사항이 없으며, 향후 개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지의 서측 주차장 부지는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조망의 간섭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 사업지 지역은 항공기소음 노출지역으로 그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중 먼지,소음,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아파트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무관합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도로면적(보도 포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공원, 도로 등),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공사 시 도로차단 등에 따라 다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냉난방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 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1단지는 “곡반초등학교”, 2단지는 “안릉초등학교”에 배치예정이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중학생은 남부중학교 2구역(곡반중, 곡선중, 남수원중, 화홍중)에 배치예정이며, 중학교 입학은[동일학군 내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p>조정 될 수 있습니다.</p> <p>203동, 204동, 205동 의 세대 측후면 방향의 부지경계에 5m 높이의 방음벽(투명형 방음판)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222동, 223동, 224동, 225동, 226동, 228동 의 세대 전면 방향과 227동의 측면 방향의 도로경계에 14.0m 높이의 방음벽(투명형 방음판)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재의 사양은 입면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p> <p>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재는 2단지 201,202,203,208,213,214,215,216,221,222,227,228동은 석재와 뿔칠마감, 그 외의 동은 테라코타판넬과 뿔칠마감으로 계획되었으며, 마감재로 인한 외벽면의 요철, 재질, 색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세대 외부창호 후레임과 발코니난간대의 색상은 입면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p> <p>아파트 세대 외부창호 후레임과 발코니난간대의 색상은 2단지 201,202,203,208,213,214,215,216,221,222,227,228은 백색계열, 그 외의 동은 회색계열로 계획되었으며 입주자 개인취향으로 임의선택할 수 없습니다.</p> <p>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일부세대 빛반사 현상이 생길수 있습니다.</p> <p>단지내 모든 동간 간격이 가까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동별 현황	
	단지	<p>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녹지,잔디,수목,휴게시설,운동시설,조경시설물,보도/차도 포장재,가로수,수경시설물(실개천연못),수목투사등,볼라드등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어린이집,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각종 정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위해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일부 주동에 한하여 주동의 하부에 부대시설 및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p> <p>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및 제연설비 가동 시,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기구 등의 위치 변경에 따라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상1층 바닥은 석재, 벽은 도장류마감 기준이며, 지하층과 기준층의 바닥은 타일, 벽은 도장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p> <p>배치 상 일부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본 단지의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p>

	<p>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1층입구 주변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산책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p>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p> <p>문주 등 외부시설물, 아파트 외관 및 색채, 동 현관 및 저층부 석재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의 경우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p> <p>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외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대지 현황 상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외곽 일부에 옹벽 등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상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장여건에 의해 추가 설치 및 삭제 될 수 있음.)</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향 또는 층수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바라며, 일조량이 일조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저층부, 부대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p> <p>단지 출입구 경비실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p>
공용시설	<p>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p> <p>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p> <p>단지 내 설치되어지는 부대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p> <p>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p> <p>단지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p> <p>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부대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p> <p>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p> <p>2단지 210동 남측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체육관,독서실 등), 210동 1층에는 부대복리시설(경로당,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등), 북측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어린이 안전을 위한 Drop Zone(통학차량 승강장, 대기공간 등)이 차량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근에 설치됩니다.</p> <p>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한 주동의 저층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창문은 화재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창호가 설치 됩니다. 계단실은 최하층과 최상층에만 화재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창호가 설치되며 나머지층은 고정창이 설치 됩니다. 그리고 계단실 구조상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계단에는 창문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p> <p>필로티 내부에 환기용(제연팬룸)D/A 및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하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자전거보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p> <p>당 건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별도 구분되어 설치되어 주차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바라며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공용설비 및 시스템	<p>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시 주방가구 하부장에 난방용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장내부에 급수 급탕용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건축 조건에 따라 위치 및 설치방식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가스배관은 발코니 등 일부 구관에서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각 동 옥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운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p> <p>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2단지 부대시설 냉난방용 에어컨은 2단지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됩니다. 인접동에 부대시설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주차장	<p>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p> <p>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주차장 사용)</p> <p>본 아파트의 지하2층 층고 높이는 약 3.6m, 지하1층 층고 높이는 약 3.9m, 지하주차장 출입구 층고 높이는 약 2.4m 이며, 실제 시공시 지하주차장 층고의 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각 주차장의 최저 차로 높이 및 유효 층고 높이에 따라 탑차 등의 출입이 불가합니다.</p> <p>단지 내 지상의 도로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용 도로 입니다.(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p>
	설계	<p>단지내 조경시설 중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육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p> <p>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특별설계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 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p> <p>본 사업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본 공사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방음벽 설치로 인한 일부 세대 조망, 일조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p> <p>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201, 202, 203, 204, 207, 208, 212, 213, 214,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8 동 옥상에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예정입니다.</p> <p>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p> <p>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단위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p>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평면도 상의 치수는 안목치수와 기준입니다.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p>
발코니	<p>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p> <p>발코니 세대간 벽체에는 인접세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p> <p>면적표상에 발코니면적은 동일하지만 주동조합시에 옆세대 단열 조치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 발코니 면적이 동, 호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p> <p>해당 세대의 위층 세대 또는 아래층 세대가 비확장으로 분양 받을 경우에는 위층세대와 아래층세대 법적 단열조치를 위해서 해당 세대의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 될수도 있으며,공동주택 특성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p> <p>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p> <p>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유지관리를 위해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야 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실외기실 및 다용도실(세탁실) 상부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천장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 세대 실외기 공간에는 외부 그릴창호가 설치되며,각 종 물건 보관 및 기타 활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창호	<p>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p> <p>세대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p> <p>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p>
기계, 전기설비	<p>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p> <p>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p> <p>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p> <p>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전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 하부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관리비에 포함되며, 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홈 IoT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입주예정기간 최초월 36개월 이후부터는 입주자에게 과금됩니다</p> <p>홈 IoT 서비스와 연동된 음성인식 스피커는 제품사양 및 모델이 변경될수 있으며, 가전제어 서비스의 경우 홈 IoT 서비스와 연동될 가전기기를 별도 구매하면 사용 가능 서비스임.</p> <p>스마트 폰 및 PC로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홈네트워크용 전용 인터넷을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p> <p>스마트 도어락은 사용자 핸드폰 지문인증으로 블루투스 연동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며, 일부 스마트 폰과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p> <p>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p> <p>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p> <p>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p> <p>지상 1~2층, 최상층 세대의 방법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기타 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p> <p>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p> <p>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p> <p>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p> <p>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급속충전시스템 확대시 전기차 충전시스템 전체 숫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장비는 관람객을 위한 냉난방장비이며 본 공사시에는 냉방전용 장비가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약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관람객의 편의성을 위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시 발코니 등의 배관 및 덕트류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의 규격이나 설치 길이 등이 건본주택 대비 일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우우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의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과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방 설비는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단지 내 소화활동을 위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동 옥상에 설치되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소(일반쓰레기 및 재활용분리수거장)은 201, 202, 203, 205, 206, 208, 209, 211, 213, 216, 217, 219, 222, 224, 227 동 인근 지상1층에 설치됩니다.	
	택배보관소는 201,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동 지상1층 필로티에 설치됩니다	
	저층부를 제외한 세대 내의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안방앞 발코니 분합창은 기 사업승인 도면은 단창이나 실제 시공은 2중창으로 설치 예정이므로 모델하우스는 2중창으로 설치 하였으며 추후 설계 변경 예정입니다	
단지 외부	세탁실과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문이 기 사업승인 도면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시공 예정대로 모델하우스에 설치하였으며 추후 설계 변경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도로경계에 설치되는 소음저감시설인 방음벽, 방음독 등의 높이 및 재질 등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형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본주택에 74B,84A,84B타입 유니트가 건립되며,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팜플릿 및 모형,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내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건본주택 내 천정 스프링클러헤드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 개소, 위치 등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무상옵션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위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건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홈 IoT 시연부스 이미지와 서비스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욕실스피커폰, 스마트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원패스,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경 외부공간 모형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식재,시설물의 위치 및 포장마감, 포장패턴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4,521,065,000	
통신,소방감리	㈜유진씨엔이	805,000,000	
전기감리	상지이앤씨(주)	649,466,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명	시공사
상호	곡반정동 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31,2층 2호(곡반정동)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33-10-01550	110111-0036502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28,208,640,000원	제 01292019-101-0009400 호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의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적용 (세면기 수전 / 싱크 수전 / 욕조, 샤워수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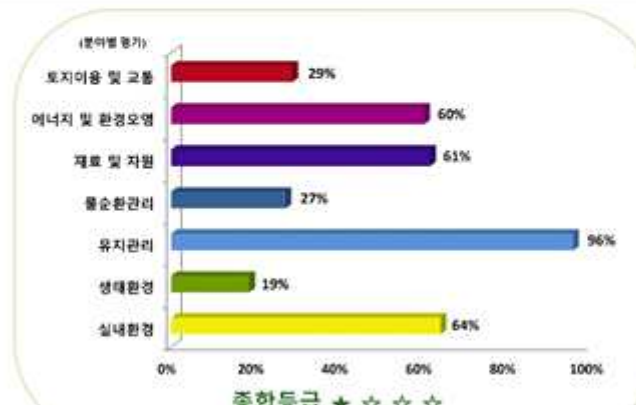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주택법」 제3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국민정동-명당2단지 차역주택 건설공사 건축주 : 국민정동-명당2단지 차역주택조합 준공(예정)일 : 2020.12.01.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민정동 186-2번지 일원 층수 : 지하2층, 지상15층 면적 : 273,362.62㎡ 건축물의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팀	인증번호 : 2019-281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9.06.25. ~ 시공완료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19년 06월 25일

한국감정원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현장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고시 제2019. 3. 2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국민정동-명당2단지 차역주택조합 건설공사 준공연도 : 2020.12.01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국민정동 186-2번지 일원 층수 : 지하2층 / 지상15층 면적 : 273,362.62(㎡) 건축물의주용도 : 공동주택 당계지 : (지하)2+1(지상)15	인증번호 : 18-0-14-0647 평가사 : ㈜주원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에너지지원 발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유한 또는 사용연차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연차당 에너지소비효율(Wh/㎡·년)	요구된	단위연차당 에너지소비효율(Wh/㎡·년)	등급	CO ₂ 배출량(kg/㎡·년)	배출차
23.0	23.0	23.0	1+	23.0	23.0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연차당 에너지소비효율(Wh/㎡·년)	단위연차당 에너지소비효율(Wh/㎡·년)	단위연차당 1차에너지소비효율(kWh/㎡·년)	단위연차당 CO ₂ 배출량(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7.8	82.2	47.3	10.5
급탕	30.7	36.8	27.1	6.1
수출	10.1	10.1	27.7	4.7
합계	88.4	112.8	111.8	17.7

* 단위연차당 에너지소비효율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광 부류에서 요구되는 단위연차당 에너지량
 * 단위연차당 1차에너지소비효율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광, 환기시스템에서 모든 단위연차당 에너지량
 * 단위연차당 1차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개화,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중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차당 에너지량
 * 단위연차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연차당 1차에너지소비효율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1 [설치] / [설치되지 않음] 상태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현장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연차당 1차에너지소비효율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16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2.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 함.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22(금) 견본주택 오픈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일: 2019.11.26(화) 1순위 청약일: 2019.11.27(수) 2순위 청약일: 2019.11.28(목) 당첨자발표일: 2019.12.05(목)

총 1,833세대 중 일반분양 402세대

| 전용 | 59㎡A, 59㎡B, 59㎡C, 74㎡A, 74㎡B, 84㎡A, 84㎡B |

분양문의 031)222-3236

■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88-1